

캐나다의 무형유산

- 정치적 맥락, 보호조치, 국제협력

양투완 고티에

캐나다 퀘벡주 무형유산위원회(CQPV) 대표

개요

본 발표에서는 캐나다의 무형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부분에서는 아직 2003년 유네스코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캐나다의 정치적·법적 상황을 고찰해본다. 특히 2011년 10월 19일에 문화유산법을 채택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법률로써 인정한 퀘벡주의 최근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 법에 규정된 보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 법률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하는 각종 보호 조치를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발표는 2003~2004년부터 퀘벡에서 실시한 목록작성 작업을 분석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강화된 캐나다 국내외의 무형문화유산 개발 노력을 소개한다. 이러한 노력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전문지식 교류, 대외적인 인정을 통해 부여된 정치적 정당성,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1. 캐나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치적·법적 배경

1. 캐나다, 문화, 유네스코

캐나다는 2005년 유네스코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도록 가장 먼저 지원한 국가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법적 자료의 개발과 여러 국제협상의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퀘벡은 캐나다 연방의 10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¹ 퀘벡주는 유네스코의 2005년 협약제정을 위해, 캐나다 대표단 내에서도 독립적인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내에서, 특히 프랑스 대표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퀘벡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밀접한 지적 교류를 이어온 유네스코 및 프랑스와 같은 언어를 공유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론적으로 퀘벡주가 세계무대에서 점하는 자리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상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징은 퀘벡주와 캐나다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대한 강한 열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점은 영화, 음악, 문학 등 문화상품의 재생산과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이 자국 내의 여러 문화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가 관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합의사항에 따라 규제되는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문화상품이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문화상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이처럼 보호된다는 사실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역시 문화의 부분집합이자 문화산업의 일부로써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2005년 협약은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 협약과 2005년 협약 간의 연계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협약의 대상인 무형문화유산은 그 종목들이 드러내는 강력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세계 문화 다양성(2005년 협약에서 추구하는 핵심 목표)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2005년 협약을 가장 먼저 비준했을 뿐 아니라 1972년 세계유산협약²도

1. 퀘벡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거주하는 연합 주로, 캐나다의 여러 주 가운데 불어 사용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면적은 166만 8,000km²에 달해 한국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2. 캐나다는 1976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다. 게다가 세계유산도시기구(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OWHC) 본부도 퀘벡시에 소재해 있다.

체결했지만 아직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기준을 피하고 있는 이유는 이 협약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특히 캐나다처럼 다문화 인구조로 구성된 회원국에게 이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큰 의무(즉, 목록작성과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2. 퀘벡법 내의 무형문화유산(캐나다)

퀘벡주는 2011년 10월 19일에 채택되었고 1년 후 발효될 예정인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서 2003년 유네스코 협약과 퀘벡주 자체의 지속가능발전법(Sustainable Development Act)³의 영향을 받은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퀘벡은 캐나다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법률 차원에서 인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은 1972년에 제정한 문화재법(Cultural Property Act)을 대체할 것이다. 2011년 신규법은 구법에서 인정한 건조물 유산과 동산문화재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한 새로운 문화유산 범주를 포함시켰다. 이 새로운 범주들은 대개 개인의 소유권에 속하지도 않고 관리 및 보호를 강제하기 위한 벌금이나 확고한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문화유산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법에 의거한 유산의 법적 지위⁴

증진	보호
문화유산 경관	사적지 유산
무형문화유산 종목	부동산 유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사물 유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기록 유산
사적지	

3_ 퀘벡 지속가능발전법(2006):

제6조. [...]

(k) "문화유산 보호": 문화재, 유적지, 경관, 전통, 지식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은 그 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문화유산은 사회의 여러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며, 이러한 유산을 보존함으로써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 문화유산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 보호, 증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 요소에 내재된 희귀성과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4_ Karine Lavolette, "Vers une valorisation des traditions: le patrimoine immatériel dans le projet de loi sur le patrimoine culturel du Québec," 앙투완 고티에(편집), Les mesures de soutien au patrimoine immatériel: gouvernements, institutions et municipalités에 수록, 퀘벡, CQPV(2012년 발간 예정).

문화유산법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진흥 및 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은 공식적인 승인법령이다. 이 법에는 두 가지 수준의 인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퀘벡주 문화부는 특정한 무형문화유산을 퀘벡 주민들의 공동 민족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와 지역 토착민 위원회들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승인을 거친 모든 문화재는 퀘벡 문화유산 목록에 추가된다. 이 법은 지자체들이 각종 요청사항 접수와 무형문화유산 사례 분석을 담당하는 지역 차원의 유산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국가적 승인법령은 이 같은 문화유산의 증진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각 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요구 평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유산의 지정이 단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 시 승인과 함께 시정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르 드부아르(Le Devoir)》신문⁶에서 일군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특정한 문화적 관습은 공식법령이나 시장수요 측면에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평가는 무엇보다 문화적 관행이 교육체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유사한 다른 대상과 비교해 무형문화유산에 제공되는 재정지원 규모, 대중매체에 소개되는 빈도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장 수요가 발생하기에 앞서 공공기관들이 내리는 특정 선택들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만약 공식 법령이 그러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본래의 목표를 완수하는 셈이 된다.

이 밖에도, 새로 제정된 문화유산법은 문화부가 자체 목록에 무형문화유산을 포함시키고 최신 정보를 꾸준히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연구, 민족학적 조사, 기록), 보급, 전승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무형문화유산과 연계된 각종 사업은 현재 1,0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문화유산기금(Fonds du patrimoine culturel)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기금의 분배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5_ 지자체는 이 업무를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계획 자문 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체계 내의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 외에 무형문화유산의 진흥과 관련된 다른 문화 주체 및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퀘벡주 일부 도시들은 이미 자체 문화 정책에 틀무형문화유산을 통합시켰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실행단계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문화유산 확인과정을 통해 도입된 매커니즘이 이들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6_ "마침내 인정 받은 무형문화유산(Le patrimoine immatériel enfin reconnu)", 르 드부아르, 몬트리올(캐나다), 2011년 11월 2일. 필자 역시 이 기고문에 서명했다.

II. 보호 추진계획 대상

캐나다 연방정부는 아직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공예 기술을 가지고 전통예술 활동을 펼치는 장인들이나 무형문화유산 연구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가와 장인, 행사,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한 지원은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나 캐나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⁷가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캐나다에서 역동적인 문화생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여가활동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해 다른 형태의 지원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종목을 담당하는 부서나 정부기관이 지원을 담당한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연행(혹은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규정되는 관행)을 위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관련 문화 주체들의 요구에 좌우된다. 이러한 요구는 세대 간 전승이나 시장 수요에 따라 얼마간 달라지며, 전승과 시장 수요는 다시 전반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발전시킬 책임은 관련 전승자와 공동체에만 거의 집중되며, 이들이 함께 모여 NGO 형태의 특수이익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유산의 장기적 보호는 이들 집단이 취하는 특정한 조치에 따라 좌우된다.

1. 뉴펀들랜드 프로젝트

캐나다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인정하는 주가 퀘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주는 해당 지역 내 살아있는 유산과 관련해 2006년 적극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문화 부문의 기록화, 기념행사, 전승 및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
7_ 여기서 '유산(heritage)'이라는 단어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된 부분적인 문화가 아니라 광의의 문화를 가리킨다. 캐나다 문화부는 퀘벡의 문화부에 상응하는 연방 기관이다.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 유산재단(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이 대다수의 추진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무형문화유산과 연계된 주제 행사의 개최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구체적인 보호 목표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다. 규모 면에서도 양탄자 제작자들의 활동을 촉진 및 발전시키는 소규모의 '양탄자 장인들과의 티타임' 프로젝트에서부터 모닥불 주위에서 진행되는 민속춤제나 머머링(mummering, 크리스마스 가정방문 전통) 부활 같은 대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마련된다.

2. 퀘백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연방정부와 유사하게 퀘백주 역시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의되는 관습을 진흥하기 위한 몇몇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보조금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지원의 한계는 있다.

퀘백주 문화부의 유산 및 박물관 담당부서는 수년 간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국가적 유산 기구' 다섯 곳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첫 걸음임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의 이름으로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행해졌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분류와 조사에 집중되었다. 2004년 이래 퀘백주는 야심 찬 온라인 목록작성 작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은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라발대학교(Université Laval)의 한 연구팀이 이끄는 민족학적 무형문화유산 자료 목록(IREPI)을 통해 퀘백 내 다수의 전통 전수자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또한 IREPI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기록과 시청각 자료의 준비 및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다수의 민족학 전공학생에게 교육했다. 무엇보다 IREPI는 대규모의 목록수집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수집 방법, 필요한 파트너십, 확보된 결과의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실 IREPI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예컨대 지난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 틀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점은 2003년 협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무 조항 중 하나인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이라는 조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퀘백의 문화유산법과 마찬가지로 이 다자조약도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목표실현 과정에 대해 확고한 지향점을 제시하려면 이러한 기본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유산 목록은 어떤 용도를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

- 1) 관리 차원의 목적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인정 및 분류 목록 시스템의 역할
- 2)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수단
- 3) 전승자들을 위한 도구
- 4) 미래에 대비한 기초적 기록보관소(보존과 기억)의 역할

많은 사람이 국가 목록은 당연히 이 기능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한다거나, 심지어 네 가지 모두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한다.⁸ 그러나 방대한 기록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퀘백의 사례를 보면 유산 목록은 일반대중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되지 못하며,⁹ 목표 대상을 더욱 구체화해야 이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내용이나 기법, 표현을 소개하는 광범위한 목록은 전승자들(퀘백에서는 '살아있는 유산의 중재자'¹⁰라고도 불린다)이 활용 방식을 전파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 목록은 효율적인 전승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퀘백에는 대부분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무형문화유산 기록보관소들이 이미 존재하며, 유용한 분석적 현장연구를 위해 반드시 광범위한 민족학적 수집 계획을 중심으로 구축된 목록의 범위 안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능 중 목록 구축을 관리 수단으로 간주하는 1)번 기능이 남는다. 퀘백의 문화유산을 담은 온라인 PIMIQ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이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자체와 IREPI 등 문화부 제휴기관에서 추가한 유산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2011년에 퀘백법에 명시된 '지정'의 경우처럼 공식 법령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인정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톨의 목적은 다소 불분명하다. 이는 추후 정식 유산목록으로 지정할 적합한 후보를 고르기 위한 예비 목록, 즉 지정 시 적용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구축된 목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인

8_ 이 밖에 다른 기능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유산, 더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토착 관습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한 유산 등록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Toshiyuki Kono(편집),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Intersentia, 포틀랜드, 2009년, 415쪽.

9_ 이 목록 내에 수집된 대상들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외에 서로간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은 각기 전혀 다른 전문가 및 대상 사용자 집단과 연관된다.

10_ 퀘백문화인적자원위원회(CQRHC), Charte des compétences du médiateur du patrimoine vivant, 2009년 10월, 참고

정을 받기 위한 간접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할까?

둘 중 어느 쪽이든 만약 이 목록의 목적이 관리 차원에 치우친다면, 이 목록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목록과는 다른 자원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정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매진할 경우에는 그 역할이 단지 지식, 연구, 목록구축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 점은 퀘벡 문화유산법에서 문화부의 보조금 배분 권한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있다.¹¹ 유산 목록이 다른 무엇보다 관리 수단으로 간주되려면 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전승, 촉진, 개발을 위한 보완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정부가 위에서 나열된 2), 3), 4)번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목록작성 조치도 퀘벡에서 개시되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4)번 기능, 즉 후대를 위해 특정 관습에 대한 기억을 기록화하여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2009년에 처음으로 구축된 무형 종교유산 목록(IPIR)은 주제 관련 전기를 제시함으로써 단지 전통 전수자들에 그치지 않고 전통 자체를 개관한다. 이는 영구히 완료되지 않는 IREPI의 특성을 배제한 흥미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퀘벡과 같은 비종교적인 주가 종교적 관습에 대한 조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IPIR은 요약 동영상, 사진,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기록의 역할을 충실히 달성한다.

그러나 문화, 더 구체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유형의 목록이 모든 개별 무형문화유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기억장치로써의 목록이 현재와 미래의 무형문화유산 실행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위에 열거된 1), 2), 3)번 기능과 비교하여 기록의 기능면에서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조사에서는 이 도구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¹²

2003년 협약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목록 구축에 관한 요구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유산 보호 노력의 많은 부분을 목록작성에 투입하고 싶어지도록 부추긴다. 이는 목록 구축이 이른바 모든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가시적인 조치이고 정치적으로 매

11. 퀘벡주 무형유산위원회(Conseil québécois du patrimoine vivant, CQPV)의 조치를 통해 제안된 법안의 78.5조가 개정되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지식'뿐 아니라 '전승'과 '증진'(mise en valeur)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2. 2010년 이후, 마시트위엇시(Mashteuiatsh) 지역의 이누족 집단 내에서 식물표본에 대한 전통지식을 분류, 수집, 기록하는 또 다른 목록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목록(Inventaire des savoirs et connaissances des Pekuakamiulnuatsh sur les plantes médicinales)은 이러한 원주민들의 살아있는 유산을 인정하고 보호 및 증진하고자 한다(Géraldine Laurendeau, 앙투완 고티에(편집), 앞서 언급한 책(2012년 발간 예정) 참조). 여기에서 전통 지식의 경우(특히 사소멸위기에 놓인 지식이면서 매우 구체적인 주제 하에 수집된 경우) 해당 목록이 효과적인 진흥, 개발 및 전승 캠페인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보존적 차원을 제공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소규모' 자료 수집은 어떤 면에서 현장연구 차원의 체계적 정보수집과 유사하다.

력적인 선택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구조와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결과물이 국제 무대에서 비교적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3년 협약에 규정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명심하고, 이러한 목표를 기준으로 목록작성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III. 캐나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역할

목록에 관한 정보 교환(모범사례, 방법론, 기대효과, 실제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 등)은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각국은 목록을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비교적 최근(2006년)에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무형문화유산 요소들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연구 방법 및 결과를 비롯해 무형문화유산의 실행 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해진 공공행정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유익하다. 뉴펀들랜드의 제랄드 포시어스(Gerald Pocius) 교수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실행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배운다.”¹³ 따라서 필자 역시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개최한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소개되는 여러 발표를 경청하고자 한다.

퀘벡주 무형유산위원회(CQPV)는 2011년 4월 퀘벡시에서 ‘무형문화유산 지원 조치: 정부, 기관, 지자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크리스틴 생 피에르(Christine St-Pierre) 퀘벡주 문화부 장관과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 행사는 1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참가한 발표자들뿐 아니라 여러 조직의 리더, 지자체 대표, 교육분야 전문가,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자, 예술가 및 장인에 이르는 다양한 인사를 한데 모았다. 성공리에 치러진 이 회의의 목표는 정부간,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문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태의 지식교류 사업도 등장했다. 예컨대 라발대학교 교수진은 최근 아이티의 국가적 무형문화유산 목록구축 작업에서 자문역할을 맡았다. 아이티 교환학생들

13_ Gerald Pocius, “뉴펀들랜드앤레브라도의 무형문화유산 고찰”, 무형문화유산 업데이트 2010년 5월 16일, Dale Jarvis 인용, 앙투완 고티에(편집), 앞서 언급한 책(2012년 발간 예정).

역시 라발대학교에 초청되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이 사업은 국제협력에 대한 적극적 바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에 분명하다.

특히 캐나다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전담 기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지식 교류에 더한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은 캐나다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뒷받침하는 여러 적극적 조치를 이끌어냈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을 위해 설립되는 네트워크만이 항상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국제 네트워크의 창설은, 예컨대 퀘벡의 전통 음악인들이 새로운 청중 개발을 통해 유산활동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예로는 민속연합(Folk Alliance) 등의 여러 조직, 축제 네트워크, 공개행사 플랫폼, 음악 학회, 전문잡지, 시상 및 상금 등이 있다. 특히 해당 공동체나 기존 청중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이러한 예술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한 전문가들이 각자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공동체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실행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공공기관 행정 담당자들이 향후 분석해볼 만한 흥미로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퀘벡에서 시작된 두 가지 구상이 국제무대에 선을 보였다. 먼저 경제박물관(Economuseums)은 작업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장인의 작업 노하우를 관찰하고 배우는 동시에 제작된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 시설의 목표는 '생계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 구상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수많은 지역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NGO로 분류되는 경제박물관 네트워크는 현재 퀘벡에만 36개 시설이 자리하며, 캐나다 해안지역의 몇몇 주에도 다수가 있고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도 7개 시설이 있다. 퀘벡의 경우, 이 시설들은 연간 3,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매년 6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세계의 젊은 음악가(Jeunes musiciens du monde) NGO는 인도 칼케리에서 퀘벡 출신자들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교를 연 후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이 아동들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음악에 중점을 둔 양질의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이후 이 사업은 원주민 공동체 하나를 포함해 퀘벡 내 4개 지역에서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빈곤지역 청소년들은 정규 교과 외의 지역 전통음악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사업은 이 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자선행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국제적 제휴와 협력을 향한 이 모든 노력은 수많은 NGO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조직화된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회원이 많아짐에 따라 퀘벡과 캐나다 전역에서 NGO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 때로는 국제적 명성과 연결되기도 하는 이러한 인식 향상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 서명하도록 캐나다 정부를 압박할 때 큰 자산이 된다.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세계적 합의는 캐나다 국내에서 이러한 문화유산의 증진을 위해 취해진 정책과 조치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령 2003년 협약이 없었다면 과연 퀘벡이나 뉴펀들랜드주가 각기 해당 정책 내에 이러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유네스코 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곧 지역적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세계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협약에 명시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요청은 지극히 유의미하다.